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 NGO 담당기자
발신	민족문제연구소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담당	김진영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간사 / 010-9811-1092)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 010-8402-1718)
문의	02-705-8655 / 02-2139-0462
일시	2018. 07. 27(금) 오후 2:00
장소	민족문제연구소 5층 회의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다길 27(청파동2가 서현빌딩)
제목	[취재요청] <b>일제 강제동원피해 소송을 둘러싼 외교부, 사법부, 김앤장의 유착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안내</b>

**<일제 강제동원피해 소송을 둘러싼  
외교부, 사법부, 김앤장의 유착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의 추악한 유착을 고발한다!”**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보도에 의해 밝혀진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을 둘러싼 사법부, 외교부, 김앤장의 유착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과 진상규명,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3.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끝)

**<일제 강제동원피해 소송을 둘러싼  
외교부, 사법부, 김앤장의 유착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의 추악한 유착을 고발한다!”**

- 때 : 2018년 7월 27일(금), 오후 2시
- 곳 : 민족문제연구소 5층 회의실
- 주최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발언1 :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발언2 : 김세은(민변, 법무법인 해마루, 소송 담당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안영숙(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질의응답 : 김민철(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기자회견문>

###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의 추악한 유착을 고발한다!

우리는 어제 한 용기 있는 현직 판사를 통하여 일제 강제동원 소송에 대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보상 청구사건 담당 대법관이 재판연구관에게 ‘한일 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며 판결의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사법부의 재판개입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을 앞에 두고 사법부의 독립은 이미 파탄이 났다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양승태 법원행정처는 ‘정의의 심판’을 기다리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판결을 보지 못하고 하나둘씩 세상을 뜨는 슬픈 현실을 앞에 두고서도 재판의 결론을 미루는 대가로 외교부로부터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 사법행정처를 총동원하여 재판 거래를 했다는 믿기 힘든 사실도 확인되었다. 일제에 의해 짓밟힌 청춘에 대한 권리 구제를 평생 동안 기다리던 피해자들의 염원을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한 사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아니다.

더욱이 이 재판을 두고 사법부와 재판을 거래한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외교부는 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일본 공사가 강하게 요구한 것을 수차례나 법원행정처에 전달하여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했다. 이에 대해 2013년 9월 박찬익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해 재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여, 피고 측인 일본 기업들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외교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접수하고, 국외송달을 핑계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5년 6월 법원행정처 임종원 전 차장은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 의견서 제출을 협의하며 대사관 법관 파견을 청탁했다.

2016년 10월 미쓰비시를 대리하는 김앤장은 박찬익 심의관이 제안한대로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였고, 11월 외교부는 “손해배상시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박찬익 전 심의관은 재판거래를 기획한 대가로 지난 2월 소송 당사자의 대리인인 김앤장에 취업했다.

사법부와 외교부, 그리고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 김앤장이 결탁하여 재판을 거래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사법의 근간과 국가주권마저 내던져버린 파렴치한 폭거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국가와 정부, 외교부와 사법부의 존재의의, 그리고 김앤장의 범죄적인 행태에 대해 그 책임을 철저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체적 부정의와 재판 거래라는 초유의 사태를 앞에 두고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1) 사법부는 강제동원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하라.

2) 외교부는 사법부, 김앤장과 결탁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위, 재판 거래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3) 검찰은 강제동원 소송을 둘러싸고 재판 거래를 실행한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 박찬익, 재판에 개입한 대법관 등 사법부 관계자, 외교부 관계자, 김앤장, 그리고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4) 국회는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사법부와 외교부의 재판 거래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2018년 7월 27일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 일제강제동원 관련 소송 현황표

연번	사건구분	법원	내용	원고
1	미쓰비시중공업 (대법원 2013다67587)	부산지법	2000.5.1 제소	박재훈 외 22 명
		대법원	2012.5.24 파기환송 판결	
		부산고법	2013.7.30 판결	
		대법원	<b>재 상고심 진행 중</b>	
2	신일본제철(1차) (대법원 2013다61381)	서울중앙지법	2005.2.28 제소	여운택 외 3명
		대법원	2012.5.24 판결, 파기환송	
		서울고법	2013.7.10 판결	
		대법원	<b>재 상고심 진행 중</b>	
3	미쓰비시 근로정신대(1차) (대법원 2015다45420)	광주지법	2012.10.24 제소	양금덕 외 4명
		광주지법	2013.11.01. 원고 일부 승	
		광주고법	2013.12.10. 피고 항소	
		광주고법	2015.06.24. 원고 일부 승	
대법원	2015.7.30 피고 상고 <b>(2017.07.31. 관련 법리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b>			
4	미쓰비시 근로정신대(2차) (광주지법 2017나59993)	광주지법	2015.5.22. 제소	이경자 외 1명
		광주지법	2017.8.8. 원고 일부 승	
광주지법	2017.9.7. 피고 항소 <b>(심리 중, 2018.11.23. 선고기일)</b>			
5	미쓰비시 근로정신대(3차) (광주고법 2017나13822)	광주지법	2014.2.27. 제소	양영수 외 3명
		광주지법	2017.8.11. 판결, 원고 일부 승	
광주고법	2017.9.7. 피고 항소 <b>(심리 중, 2018.12.12. 선고기일)</b>			
6	신일철주금(2차) (서울고법 2015나32310)	서울중앙지법	2013.3.11 제소	8
		서울중앙지법	2015.11.13 판결, 원고 승소	
서울고법	2015.12.1. 피고 항소 <b>【추정】</b>	곽해경 외 6명		
7	신일철주금(3차) (서울중앙지법 2016나56389)	서울중앙지법	2015.5.12 제소	김문삼 외 2명 (유족)
		서울중앙지법	2016.8.19 판결, 원고 승소	
		서울중앙지법	2016.9.5. 피고항소 <b>【추정】</b>	
8	주식회사 후지코시(1차) (서울고법 2014나58797)	서울중앙지법	2013.2.14 제소	31
		서울중앙지법	2014.10.30 원고 일부승소 (김계순 외 27명 - 피해자 본인 원고 13명, 사망한 피해자 4명의 유족원고 15명)	
서울고법	2014.11.14 피고 항소 <b>【추정】</b>			
9	주식회사 후지코시(2차) (서울고법 2016나2084567)	서울중앙지법	2015.4.7 제소	김옥순 외 4명
		서울중앙지법	2016.11.23. 판결, 원고 승소	
서울고법	2016.12.1. 피고 항소 <b>【추정】</b>			
10	주식회사 후지코시(3차) (서울중앙지법 2017나21113)	서울중앙지법	2015.5.22 제소	이춘면
		서울중앙지법	2017.3.16. 판결, 원고 승소	
		서울중앙지법	2017.3.31. 피고 항소 <b>【추정】</b>	